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13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의자 : 엄태영 · 조지연 · 박덕흠  
서천호 · 김재섭 · 강명구  
이만희 · 박성민 · 고동진  
박정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일정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 략)</p>	<p>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p>